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포상금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경상남도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예산관계법령에 따라 포상금 비목(303-01 목)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6조제2항 [별표 12]에 따르면 포상금 비목(303-01)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 포상금예산 집행부서에서는 포상금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기간 동안 2012. 1. 1.부터 2016. 10. 31.까지 경상남도 포상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결과, [표] ‘법령 또는 조례 근거 없이 포상금 집행 현황’과 같이 216건 276,357천 원의 집행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이 포상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법령 또는 조례 근거 없이 포상금 집행 현황(2012. 1. ~ 2016. 10.)

(단위 : 천원)

구 분	계		규칙 등		방 침	
	건 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계	216	276,357	202	180,427	14	95,930
2012년	52	71,497	50	46,500	2	24,997
2013년	47	77,724	40	28,540	7	49,184
2014년	54	86,342	51	65,643	3	20,699
2015년	52	24,638	50	23,588	2	1,050
2016년	11	16,156	11	16,156	-	-

※ 출처: 감사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포상금 비목 예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사업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